

#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

제 정 : 2026. 2. 1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금강대학교의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이동수업”이란 학교 소재지에 출석하기 곤란한 다음 각 목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.
  - 가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
  - 나. 국가대표 선수,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
  - 다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
2. “협동수업”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(이하 “협동기관”이라 한다)이 보유한 시설·장비·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협동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②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고등교육법 제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의 현장실습
2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학교 밖 수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현장실습
3. 그 밖에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교육·현장실습

**제4조(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)**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1. 학사학위: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
2. 석사 및 박사학위: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

**제5조(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)** ①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 학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이동수업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

2. 수업장소의 시설·설비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
3. 담당 교원의 배정 방법 및 동의 절차
4. 학기 중 이동수업을 받을 사유가 소멸된 학생의 학사관리 방안
5. 그 밖에 이동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 학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협동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2. 협동수업의 운영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
3. 협동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·협동기관·학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
4. 협동수업 운영 관련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협동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운영원칙)** ① 협동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 교원은 협동기관의 교육적 적합성, 시설·장비 및 인력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협동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교과목 담당 교원은 협동수업이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업 목표, 교육 내용, 운영 기간 및 수업 방법 등을 적절히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협동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 및 부담 주체는 운영계획에 명확히 포함하여야 하며,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해당 사항이 수강생에게 사전에 안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교과목 담당 교원은 협동수업 운영 과정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수업 장소 및 활동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⑤ 교과목 담당 교원은 협동수업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의 관리·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, 운영상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학교밖수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총장은 학교 밖 수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교밖수업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3. 학교 밖 수업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
4. 그 밖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총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직원, 학생, 학사 운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**제8조(보칙)** ① 그 밖의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수강신청, 성적 부여 등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금강대학교 학칙」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